

제정 2020.04.09

개정 2022.02.25

개정 2026.05.11

『환전지갑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의 환전지갑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정리)

- ① "환전지갑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예약한 목표환율이 은행의 고시환율과 일치할 때 자동 환전(또는 자동 원화로 바꾸기)이(가) 신청 또는 거래 체결되는 서비스입니다.
- ② "채널"이라 함은 하나은행의 전자금융 환전서비스가 제공되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③ "제휴사"라 함은 은행과 제휴계약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회원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④ "자동 환전"이라 함은 고객이 목표환율과 거래 체결 유효기간을 지정하여 외화매입을 신청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거래 체결 유효기간 내에서 은행이 고시한 '현찰 살 때' 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목표환율과 일치하거나 낮을 때에 은행이 자동으로 고객의 외화매입 신청 또는 거래를 체결하여 처리된 외화를 보관하는 서비스 입니다.
- ⑤ "자동 원화로 바꾸기"라 함은 고객이 목표환율과 거래 체결 유효기간을 지정하여 외화매도를 신청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거래 체결 유효기간 내에서 은행이 고시한 '현찰 팔 때' 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목표환율과 일치하거나 높을 때에 은행이 자동으로 고객의 외화매도 신청 또는 거래를 체결하여 원화로 바꾸기 되는 서비스 입니다.

제3조 (서비스 신청)

- ① 본 서비스의 이용 신청은 은행이 별도로 지정한 채널에서 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환전할 통화, 환전할 금액, 목표환율, 거래 체결 유효기간을 입력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③ 본 서비스의 신청 가능 통화는 은행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④ "자동 환전"시 적용되는 환율은 은행이 고시하는 '현찰 살 때' 환율, "자동 원화로 바꾸기"시 적용되는 환율은 은행이 고시하는 '현찰 팔 때' 환율을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 화면에 명시된 환율(spread) 우대율을 적용합니다.
- ⑤ "자동 환전" 및 "자동 원화로 바꾸기"는 각 1건씩 신청 가능하며, 기 신청 건이 미체결중인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미체결중인 기 신청 건을 취소한 후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⑥ 본 서비스의 신청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 ⑦ 본 서비스 신청 가능시간은 00시-23시로 하며, 신청 건의 거래 체결은 은행영업일의 영업시간 내(09-16시)에만 가능합니다.
- ⑧ "자동 환전" 신청은 1일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환전 후 외화 미수령 잔액을 포함한 보유금액 한도(각 제휴사 별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내)와 자동 환전을 포함한 환전 신청 가능 금액 한도(전 제휴사 합산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월간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매월1일~말일), 연간 3만불 상당액(1.1~12.31) 이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⑨ "자동 원화로 바꾸기" 신청은 1일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전 제휴사의 외화 수령 금액, 원화로 바꾸기 금액, 외화계좌 이체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일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⑩ "자동 환전"과 "자동 원화로 바꾸기" 서비스는 분리되어 서비스 될 수 있습니다.

제4조 (거래의 체결)

- ① "자동 환전" 거래는 은행이 고시한 '현찰 살 때' 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목표환율과 일치하거나 낮을 때, "자동 원화로 바꾸기" 거래는 은행이 고시한 '현찰 팔 때' 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목표환율과 일치하거나 높을 때, 고시환율과 고객이 지정한 목표환율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외화 매매거래를 처리합니다.
- ② 하나머니 서비스¹⁾에서 하나머니결제 "자동 환전"을 신청한 경우, 은행은 "자동 환전"을 처리하여야 할 때에 통장, 수표, 지급 청구서 없이 고객의 하나머니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1) 하나카드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하나머니(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포인트)를 적립·충전·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하나카드는 고객의 환급 요청에 따라 하나머니를 환급하여 하나은행에 지급하며, 하나은행은 수취한 원화(환급금)를 외국환으로 환전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처리합니다.

- ③ 가상계좌결제 “자동 환전”을 신청한 경우, 은행은 “자동 환전”을 처리하여야 할 때에 고객에게 환전 대금 입금용 가상계좌 정보를 전달하며, 전달 후 30분 이내에 입금이 확인되면 “자동 환전”을 처리하고, 30분 이내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 신청 건은 취소 처리 합니다.
- ④ 하나머니 서비스¹⁾에서 “자동 원화로 바꾸기”를 신청한 경우, 은행은 “자동 원화로 바꾸기”를 처리하여야 할 때에 하나머니로 해당금액을 이체합니다.
- ⑤ “자동 환전” 체결 후 고객은 해당 채널에서 외화수령점을 신청하고 영업시간 내(체결 당일 포함) 외화 현찰로 수령할 수 있으며, 원화로 바꾸기(현찰 팔 때 환율 적용)하거나 본인 명의 외화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거래결과의 통지)

본 거래의 처리 결과는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 또는 메신저 프로그램(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6조 (신청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

고객은 서비스 신청 내용에 따라 거래가 체결된 후에는 체결된 거래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신청 건은 고객이 직접 신청한 채널에서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고객의 서비스 신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 ① 본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하나머니 서비스¹⁾ 및 제휴사 채널을 통해 환전, 원화로 바꾸기 및 환전지갑 선물하기를 이용하여 제3조 ⑧항과 ⑨항의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자동 환전” 할 때에 제3조 ⑧항의 외화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③ 하나머니 서비스¹⁾를 통해 “자동 환전” 할 때에 하나머니의 잔액이 거래금액보다 작은 경우
- ④ 하나머니 서비스¹⁾를 통해 “자동 원화로 바꾸기” 할 때에 하나머니 잔여 보유한도²⁾를

²⁾ 충전계좌 등록 시 최대 200만 하나머니, 충전계좌 미등록 시 최대 50만 하나머니

초과하는 경우

- ⑤ 하나머니 서비스¹⁾를 통해 “자동 원화로 바꾸기” 할 때에 환율 상승으로 인해 제3조 ⑨항의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⑥ 하나머니 서비스¹⁾를 통해 “자동 환전” 및 “자동 원화로 바꾸기”를 신청하고, 체결 시점에 고객이 하나머니 서비스¹⁾ 정상 회원이 아닌 경우

제8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이용하는 각 채널별로 최초 1 회의 서비스 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환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하나머니 서비스 이용약관』, 『외국환거래법』 등 상관계에 따릅니다.